

1. 개정 이유

수상레저활동 인구의 증가, 수상레저 기반 확대 등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법령은 수상레저의 안전관리 기준, 보험 관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탄력적인 대응이 곤란하였음.

또한, 현행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한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 신설, 수상레저 안전관리와 보험 관리 등 신규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안 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조종면허 증명서 발급(안 제17조)

정부24, 아포스티유 시스템 연계를 위하여 조종면허 발급사실을 증명하는 면허증명서 발급제도 신설

다.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운항장비 기준 명확화(안 제29조, 별표 5)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갖추어야 할 장비의 세부기준을 정하면서, 내수면의 경우 보다 완화된 장비를 갖추 수 있도록 명시

라.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안 제31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상레저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마.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안 제40조, 별표9)

보험회사등은 보험등에 가입대상자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사실을 별표 9에서 정하는 시기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바. 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안 제41조)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험 가입의무자의 보험 가입여부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년 기관별 수상레저안전관리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수상레저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서장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이나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2장 조종면허

제3조(외국인에 대한 조종면허의 특례)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2. 조종기간: 국제경기대회 개최일 10일 전부터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 10일까지
3. 조종지역: 국내 수역
4. 국제경기대회 종류 및 규모: 2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경기대회

제4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방법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개인정보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에 의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면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제5조(면허시험의 공고) ①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면허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면허시험 실시일 14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시험의 날짜 및 장소
2. 시험과목
3. 응시자격
4.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5. 그 밖에 면허시험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실거나,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하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6조 (응시원서의 제출) ①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2.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시험 면제 대상: 영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경찰청장은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인 또는 재외 동포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나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해당 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시표를 발급받은 사람이 응시표를 잃어버렸거나 그 응시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실기시험의 실시) ①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수상레저기구 1대당 시험관 2명이 탑승해야 한다.

② 실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에 시험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검인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실기시험 채점표 검인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면허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시험성적표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이하 “면제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제10조(면제교육기관 준수사항 및 교육내용)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면제교육기관의 종사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그 밖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발급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면제교육기관에서 실시해야 할 교육과목별 세부내용, 시간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면제교육기관 행정처분 통지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면제교육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2조(조종면허증의 갱신연기 신청서 등)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사전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근거법조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수상안전교육의 운영 등) ① 영 제16조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는 수상안전교육의 과목·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안전교육과 관련한 연간 일정을 수립하고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해양경찰관서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④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장은 안전교육을 마친 사람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상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5조(안전교육 위탁기관 행정처분 통지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근거법조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로 한다.

제16조(면허증의 발급 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이하 “면허시험”이라 한다)의 합격자, 재발급 신청자 또는 갱신 신청자에게 합격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일, 갱신의 경우에는 갱신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하려는 사람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3.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상안전교육 수료증(갱신하려는 경우만 제출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라 면허증을 신규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대장, 갱신발급 또는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재)

발급 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면허 증명서의 발급) ① 제16조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그 면허를 증명하기 위하여 국문 및 영문의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면허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8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에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면허증에 적힌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정지·경고처분 통지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처분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면허증에 적힌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관서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범죄의 종류 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죄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범죄행위
 -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 라. 「해사안전법」
 -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아. 「양식산업발전법」

4. 이 법을 위반한 범죄행위

제20조(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으로, 근거법조의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및 ”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으로 한다.

제21조(시험대행기관의 행정처분 통지서)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통지서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서식 중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은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으로, 근거법조의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한다.

제22조(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교육기관의 강사

2.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

3.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강사

4. 면제교육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의 책임운영자(강사 또는 시험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교육 대상자별로 1년에 한 번 정기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별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제교육기관, 시험대행기관: 21시간 이상

2. 안전교육 위탁기관: 8시간 이상

③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 외에 1년에 8시간 이하의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정기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교육이수자로 인정해야 한다.

⑤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안전준수의무

제23조(인명안전장비의 착용) ①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

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명안전장비에 관하여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명조끼[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의 경우에는 보드 리쉬(board leash: 서프보드 또는 패들보드와 발목을 연결하여 주는 장비를 말한다)를 말한다]를 착용해야 하며, 워터슬레드를 이용한 수상레저활동 또는 래프팅을 할 때에는 구명조끼와 함께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형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해야 할 구명조끼·구명복 또는 안전모 등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특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자가 착용해야 하는 인명안전장비의 종류를 특별히 지시할 때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제24조(항해구역 준수의 예외 등) ① 영 제21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낙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낙시어선업을 겸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은 제외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2. 「수산업법」 제27조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승인받은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3. 「수산업법」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에 사용되었던 기관

② 영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운항구역 외의 구역을 운항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운항구역 외 운항 신고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기상특보활동 신고서) 영 제22조에 따른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신고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26조(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제출(인터넷 또는 팩스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 단서에서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단의 구성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연해구역, 근해구역 또는 원양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동력 수상레저기구와 500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동행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2.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한 수상레저기구 2대 이상으로 선단(船團)을 구성하여 선단 내의 수상레저기구 간에 500미터(무동력수상레저기구 간에는 200미터를 말한다) 이내의 거리를 유지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경우

제27조(사고의 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고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3.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4.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제28조(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① 법 제25조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동시 감독하는 수상레저기구가 3대 이하인 경우
2. 해당 수상레저기구가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견인하고 있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하 “수상레저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장 안에서 탑승 정원이 4명 이하인 수

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이용객을 탑승시켜 조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경우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
교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
는 경우

라. 수상레저활동 관련단체 중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
체가 실시하는 비영리목적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수상레저기
구를 조종하는 경우

② 법 제25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급 조
종면허 소지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소지자와 함께 탑승하여 조종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면허의 소지자가 법 제27조 및 제28조를 위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탑승하는 등 조종하는
사람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야간 운항장비)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
동을 하려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해등
2. 전등
3. 야간 조난신호장비
4.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5. 통신기기

6. 구명부환

7. 소화기

8. 자기점화등

9. 나침반

10. 위성항법장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의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면의 넓이, 물의 세기 및 깊이 등을 고려하여 야간 운항을 하는 데에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운항장비 중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야간 운항장비의 일부를 갖추지 않게 한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항장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의 조정)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야간 수상레저활동시간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가 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범위에서 조정해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처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

리할 수 있다.

1.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조종면허에 관한 업무
2. 법 제19조에 따른 종사자 교육에 관한 업무
3.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 등록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열람,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2조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및 등록증·등록번호판의 발급에 관한 업무
6.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5조에 따른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업무
7.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4조에 따른 시험운항에 관한 업무
8.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원 교육에 관한 업무
9.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안전검사, 안전검사증 발급 및 열람에 관한 업무
10. 이 법 또는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률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5장 수상레저사업

제32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려주는 사업 중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또는 카이트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제1호부터 제3호(인명구조용 장비명세서는 제외한다)까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조종면허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법 제3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6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6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하려는 자(법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4조(수상레저사업 등록의 갱신신청 등)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을 갱신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등록갱신신청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사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등록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갱신을 신청한 자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다시 발급해야 한다.

제35조(휴업 등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휴업하거나 폐업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휴업

· 폐업 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기 3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와 제3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시 개업하기 7일 전까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의 수리와 관련해서는 제3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6조(이용요금의 신고) 법 제42조에 따라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변경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정비 및 원상복구의 명령)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로 한다.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해당 수상레저사업자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해당 수상레저기구 앞면의 왼쪽·오른쪽 상단에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를 각각 붙여야 한다.

④ 수상레저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은 경우 제3항에 따라 부착된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의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되며,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는 이를 떼어 내서는 안 된다.

제38조(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를 운영하는 수상레저사업자와 그 종사자는 법 제45조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6장 보험

제40조(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등의 통지)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자(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가 보험이나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려야 하는 시기는 별표 9와 같다.

②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의 계약 체결 사실 등을 알릴 때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이하 “가입관리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되, 가입관리전산망이 작동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③ 보험회사등이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신규 등록기구의 경우 안전검사 번호를 말한다)
2. 수상레저기구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를 말한다)
3. 보험등 계약기간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에게 보험등 가입을 명하는데 필요한 항목

제41조(보험등 가입여부의 확인)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의무자가 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할 때에는 가입관리전산망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보험등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보험등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 자료를 확인하기 위한 전산파일이 생성되지 아니한 경우
2. 가입관리전산망의 장애 등으로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7장 보칙

제42조(수수료)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 시험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등”이라 한다)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등의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행기관등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한 후 해양경찰청장에게 서면으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승인하는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하며, 대행기관등은 승인된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대행기관등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4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2조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교육: 2014년 1월 1일
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의 원거리 수상
레저활동 허용 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무면허조종이 허용되는 경우: 2014년 1월 1일
4. 제32조 및 별표 6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38조 및 별표 7에 따른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사업
자 등의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6. 제39조 및 별표 8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기준: 2022년 1월 1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교육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상레저사업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
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4조에 따라 사업등록의 갱신신청을 하는 경
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는 2024
년 6월 1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 행위로 종전 규칙의 별표 2 및 별표 13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은 이 규칙 별표 4 및 별표 8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제2호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가목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④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2호사목(5)(라) 중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의 자격증(0.5) 중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을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준수사항 등 (제10조제1항 관련)

1. 면제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

가.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유지해야 한다.

- 1) 정관(영 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중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 2) 지정서 및 지정관계 서류
- 3) 직원명부(강사 등 자격 입증서류 포함)
- 4) 면허시험이 면제되는 교육(이하 이 표에서 "교육"이라 한다) 관련 업무규정
- 5)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
- 6)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실시와 관련한 서류

나. 가목4)에 따른 관련 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과목·내용·방법·시간)에 대한 과목별 교수안
- 2) 시청각 시설 및 영상교육 교재
- 3) 교육 업무의 집행절차
- 4) 교육장별 책임운영자 및 강사의 배치계획
- 5) 강사의 준수사항 및 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사항
- 6) 교육기자재 등 교육용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 7) 교육장 종사자에 대한 인력관리 사항
- 8)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관할 해양경찰서장에 게 제출해야 한다.

- 1)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설비)에 관한 사항
- 2) 교육과 관련한 각종서류 및 대장의 기재 및 관리·보관에 관한 사항
- 3) 교육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4) 강사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사항

- 5)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6) 교육용 수상레저기구의 확보 및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 7) 교육생 출석부
- 8) 분기별 교육 결과 및 계획 보고서
- 9)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발행한 수료증 발급대장
- 10)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시한 사항

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시작 3일전(공휴일 제외) 사전 교육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매회 교육을 종료한 후 5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면허 발급대상자의 교육결과 및 수료증 각 1부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출석부나 CCTV영상 등 교육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2) 교육과 관련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 3) 민원 발생 상황 및 처리(사유 발생시)
- 4) 교육 시 책임운영자 및 강사 주관 교육 내용

마.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교육 종사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하게 교육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을 받도록 알선,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안 된다.
- 3) 교육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기타 부정한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 4)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종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 5)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연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된다.
- 6) 그 밖에 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바. 일일 교육시간은 총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중 실습시간은 4시간 이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사.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은 1개월 이상 교육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을 중지하는 날의 5일 전까지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교육을 중지하는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건물 신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5개월의 범위 안에서 교육중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면허증 발급과 관련한 사항

가. 해양경찰서장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제1호다목의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나. 해양경찰서장은 제1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서류 확인 또는 가목에 따른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면허증 취득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게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 해양경찰서장은 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한 서류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 해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3. 기타

가. 그 밖에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서류의 서식,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면허증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교육내용·시간·방법(제10조제2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방법
가.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해사안전법」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4시간	이론
나. 수상상식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시간	이론
다. 구급 및 응급 처치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4시간	이론 및 실습
라. 모터보트 개요	1) 구조 2) 조종 성능(추진장치와 키의 작용, 정지타력, 선회권, 활주, 트립 등)	4시간	이론
마. 항해 및 기관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거리 구하기 등), 항해방법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4시간	이론 및 실습
바. 조종술	1) 핸들 및 속도전환레버 등 조작 요령 2) 출발 전 점검 및 출발 요령 3) 저속에서의 직진·선회·변침 및 정지 요령 3) 중속·고속에서의 직진·선회·변침 및 정지 요령 4) 장애물 회피 요령 5) 후진 및 접안 방법 6) 인명구조 요령	16시간	실습

2. 요트조종면허

가. 관계법령	1) 「수상레저안전법」 2)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3) 「해사안전법」 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5) 「해양환경관리법」 6) 「항로표지법」	4시간	이론
---------	--	-----	----

나. 수상상식	1) 수상 기초(해류, 조류, 조석, 압초, 어망 등) 2) 해양기상(기상 개요, 기상 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시간	이론
다. 구급 및 응급처치	1)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2) 수상에서의 생존 요령, 체온손실 응급처치 3) 인공호흡법 및 심폐소생법	4시간	이론 및 실습
라. 요트개요	1) 구조 및 장비(선체, 돛, 돛대와 붐, 리깅, 그 밖의 부속품 등)의 구성·원리·취급방법 2) 요트의 추진원리(바람과 범주, 풍압과 횡저항 및 기본 범주법 등)	4시간	이론
마. 항해 및 기관	1) 항해 계기, 항로 표시, 해도(종류, 용도, 보는 법, 위치·거리 구하기 등), 항해계획서 작성, 항법 및 통신용 장비 2)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 연료, 냉각수, 윤활유	6시간	이론 및 실습
바. 범주법	1) 접이안 및 결색법 2) 풍상 범주법 3) 풍하 범주법 4) 자유 범주법 5) 황천 범주법 6)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 원해항해 7) 범주 시 인명구조 요령	18시간	실습

※비고: 면제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양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해야 한다.

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제14조제1항 관련)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시간	
		신규	갱신
1. 수상레저안전 관계 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선박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규 정된 의무와 금지사항 나. 법령 위반 사고·행정처벌 사례 등	30분	20분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가. 기구의 구조 및 추진방식 나. 레저활동 전·후 점검사항 다. 소모성 부품의 교환 및 보관요령 라. 자주 일어나는 고장 및 응급조치 방법 등	50분	40분
3. 수상상식	가. 해양 위험 기상의 종류와 대처방법 나. 레저활동에 필요한 기초상식 - 휴대폰 충전상태 확인,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 출항 전 기상상태(특보, 물때 등) 확인 등	50분	30분
4. 수상구조	가. 필수 구명장비 및 사용법 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다.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라. 위급상황 발생 시 사고 및 대처방법 - 해로드 앱 사용법 등	50분	30분
비 고	1. 교육방법: 신규교육 - 집합강의 교육, 갱신교육 -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강의 교육 2. 갱신대상자가 신규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갱신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3. 평가: 온라인 교육 시 수상안전교육 내용 중 10문제 출제 가. 합격기준: 60점 이상(합격 시까지 기회 부여) 나. 시험시간: 30분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면허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허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마.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위반 당시에 이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면허를 받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면허취소			
나. 조종면허 효력정지 기간에 조종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면허취소			
다. 조종면허를 받은 자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면허취소			
2) 「형법」 등을 위반한 다음의		면허취소			

어느 하나의 범죄 가)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나)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다) 약취·유인 또는 감금 라)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우로 한정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을 위반한 범죄 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라) 「해사안전법」 마) 「수산업법」 바) 「내수면어업법」 사) 「수산자원관리법」 아) 「양식산업발전법」 자)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라. 법 제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4호	면허취소			
마.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종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	면허취소			
바.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7호				
1)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사람에게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또는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2)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히거나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경고	면허정지 2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사.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조종하게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8호	면허정지 3개월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아.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9호	면허정지 6개월	면허취소		
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0호	경고	면허정지2 개월	면허정지6 개월	면허취소

야간수상레저활동 시 갖추어야 할 운항장비 기준(제29조제4항 관련)

장비명	기준	수량
1. 항해등	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해사안전법」 제81조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항행 중인 동력선의 등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세일링요트의 경우 「해사안전법」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해사안전법」 제83조제5항따른 항행 중인 범선의 등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 내수면의 경우 1개의 백색 전주등만 설치할 수 있다.	-
2. 전등	서치라이트 또는 방수형 랜턴	1
3. 야간 조난신호장비	로켓낙하산 신호, 신호홍염(전자식 포함) 또는 불꽃신호기(전자식 포함)	1
4. 등(燈)이 부착된 구명조끼	구명조끼 표시등(Life jacket Light)가 추가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	정원수
5. 통신기기	VHF(초단파 무선설비), LTE-M 송·수신기 또는 휴대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6. 구명부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 기준」 또는 「어선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 *내수면을 운항하거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레스큐 튜브로 갈음할 수 있다.	1
7. 소화기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방지 및 진압에 적합한 휴대식 또는 간이식 소화기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제외한다	1
8. 자기점화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 기준」 또는 「어선설비 기준」에 적합한 제품	1
9. 나침반	조타자기컴퍼스, 휴대용자기컴퍼스	1
10. 위성항법장치	보정위성항법장치(DGPS) 또는 위성항법장치(GPS), 또는 해양안전 모바일 앱(App, 예: 해로드, 바다내비 등)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제32조제3항 관련)

1. 수상레저사업(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빌려주는 사업은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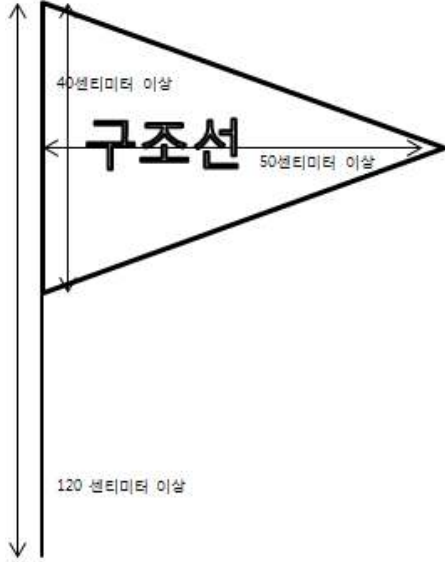
항목	내용	
가. 사업장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계류장·탑승장, 매표소, 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영업구역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 한다.	
다. 자격기준	1)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 중 1명 이상은 다음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동력수상레저기구가 포함된 경우: 1급 조종면허 나)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만 있는 경우: 2급 이상의 조종면허 다) 세일링요트만 있는 경우: 요트 조종면허 라)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만 있는 경우: 해당없음 2) 가목에 따른 조종면허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 등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라. 수상레저기구	1) 공통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기구여야 하고,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제4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기구여야 한다.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가) 블롭점프 (1) 점프대의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여야 한다. (2) 에어매트 주변의 수심은 2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에어매트의 앞쪽으로 5미터 이상, 양옆으로 3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부표 등을 설치하여 그 공간을 표시해야 한다. (3)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 점프대와 에어매트는 2미터 이상 겹쳐서 설치해야 한다. (4) 에어매트(점프대 아래에 설치하는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를 말한다)는 움직이

			지 않도록 로프 등으로 고정해야 하고, 로프 등은 에어매트 밑으로 설치해야 한다. (5)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나) 워터파크	(1) 워터파크 높이는 수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로 설치해야 한다. (2) 워터파크 주변의 수심은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워터파크 주변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폰툰(Pontoon) 등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를 설치해야 하고, 워터파크와 도보이동을 위한 설비 사이의 거리는 1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선착장 정면부 등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마. 인명 구조용 장비 등	1) 구명조끼	가)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한다. 나) 구명조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A형 또는 B형 스포츠형 구명복(부력보조복은 제외한다)이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 또는 「어선설비기준」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안전모	가) 워터슬레드,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 워터파크)를 사용하거나 래프팅을 하는 경우에는 탑승정원의 1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안전모를 갖추어야 하고, 탑승정원의 10퍼센트는 소아용으로 하며, 갖추어야 하는 안전모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충격 흡수성이 있을 것 (2)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3)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4)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5)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할 것	
	3) 구명부환	(가)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레드는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 정원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갈음하여 드로우 백(draw bag, 구명 구조 로프 가방)을 갖추 수 있다.	

	(다) 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지름 6밀리미터 이상, 길이 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구명줄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5) 예비용 노 · 상앗대	(가)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기구별로 노 또는 상앗대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나)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2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6) 통신장비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7) 소화기	탑승 정원이 13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 조타실(操舵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 외 탑승 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는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바. 비상구조선	1)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 패러세일, 워터슬레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제외한다)의 수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케이블 수상스키 또는 케이블 웨이크보드 등 케이블을 사용하는 수상레저기구만을 갖춘 수상레저사업장의 경우 다른 수상레저기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1대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가) 수상레저기구가 30대 이하인 경우: 1대 이상 나) 수상레저기구가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 2대 이상 다) 수상레저기구가 51대 이상인 경우: 50대를 초과하는 50대마다 1대씩 더한 수 이상 2)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자가 해당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에서 정하여 사용하되, 탑승정원이 3명 이상, 속도가 20노트(Knot)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가) 망원경 1개 이상 나) 구명부환 또는 레스큐 튜브 2개 이상 다) 호루라기 1개 이상 라)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3)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巡視)와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하여 사용해야 하며, 영업 중에는 항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수(平水)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및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를 운용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그 모터보트 또는 세일링요트의 수 만큼 해당 수상레저기구 안에 비상구조선을 적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4) 비상구조선에는 아래의 규격에 맞는 비상구조선 표지 깃발을 보기쉬운 곳에 부착해야 한다.



- 깃발(면)
 -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 깃발(면) 색
 - 주황색(RGB 254.97.0)
- 깃발(면) 재질
 - 폴리에스테르 방수원단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
- 깃대
 - 120센티미터 이상의 견고한 재질
- 구조선(문자)규격
 - 높이 8센티미터 이상, 흰색

- 5) 제32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표 중 계류장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조정한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을 최대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수면과 가까운 장소에 비상구조선을 두어야 한다.

사. 인명구조요원

- 1)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하고,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승선정원이 4명 이하인 래프팅기구의 경우에는 영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정하는 수의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하고, 워터파크의 경우에는 면적이 660m² 를 초과할 때마다 1명의 인명구조요원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 2)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구조선의 수에 따라 두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각 기구마다 별도의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 3)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4)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한다.
- 5)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 자격을 갖추고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해당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기간 동안 다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종사해서는 안된다.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 운영 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제38조 관련)

1.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

가. 에어매트의 공기주입구 및 표면, 정박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 점프대에서 뛰는 사람과 에어매트에서 수면으로 떨어지는 사람은 각 1명으로 한정한다.

다. 점프대 위와 아래 각 1명 이상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점프대 아래의 관리자는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다.

라. 이용자가 구멍조끼와 안전모를 착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 이용자가 관리자의 감독하에 주간에만 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제32조 단서에 해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빌려만 주는 사업

가. 보드 및 보드리쉬(board leash), 패들 등 빌려주는 기구와 부속품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나. 사업장 인근 활동수역의 기상정보, 조류, 위험한 지형지물 등 수상상태, 안전수칙(보드리쉬 착용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 이용객을 인솔하여 활동수역에서 직접 교육하는 강사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휴대용 구명장비(휴대용 구명튜브, 레스큐 튜브 등) 1개 이상을 가까운 장소에 두어야 한다.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48조제1호	등록 취소			
나. 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및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법 제48조제2호 · 제3호	등록 취소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람을 사상(死狀)한 경우	법 제48조제4호				
1) 고의로 사람을 사소한 경우		등록 취소			
2)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3) 과실로 사람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진단한 상해를 입힌 경우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라.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사업에 이용한 경우	법 제48조제5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마.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6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2개월	등록 취소	
바. 법 제42조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7호	경고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사.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제49조제2항, 제50조의 규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 제7호	업무 정지 1개월	업무 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비고

위 표 라목2) 및 3)의 경우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와 피해자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보험등 계약 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제40조제1항 관련)

구 분	통지 시기
1.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체결 사실	계약 체결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등 계약의 해지 사실	계약 해지 사실을 보험회사등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날부터 2일 이내. 다만, 보험계약의 효력소멸일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무보험 계약의 미체결 사실	
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20일까지
나. 매월 1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같은 달 말일까지
다. 매월 21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보험등 계약이 끝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수수료(제42조 관련)

(단위: 원)

항목		관련 조문	수수료
1. 면허시험	필기시험	법 제8조제1항	4,800
	실기시험	법 제8조제1항	64,800
2. 안전교육		법 제13조제1항	14,400(교재 포함)
3. 면허증	신규발급	법 제15조	5,000
	갱신·재발급	법 제15조	4,000
4. 수상레저사업 등록	신규등록	법 제37조제1항	20,000
	변경등록·갱신	법 제37조제2항 및 제38조	10,000
	휴업·폐업	법 제37조 및 제41조	무료
	재개업	법 제37조 및 제41조	20,000

조종면허 결격사유 통보대장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응시자가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접수자	확인자
------	-----	-----	-----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대리접수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응시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영문)	성		
		이름		
	※ 성명(영문)란은 영문 조종면허발급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소			
	국적	자택 전화번호	사진 (3.5cm × 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내에 촬영한 것)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		

응시 면허 종별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	--

면제 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	------	------

「수상레저안전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병력(病歷) 신고서(응시자가 직접작성)

- 정신질환, 경련성 질환, 마약류, 알콜중독 등 -

(1) 귀하는 조현병·정동장애 및 이에 준하는 증세로 인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	없 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종료일: 치료개시일: 치료 병원:		
(2) 귀하는 경련성 질환(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	없 음
(있는 경우) 병 명: 치료종료일: 치료개시일: 치료 병원:		
(3) 귀하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중독 등으로 치료받거나 사법기관에 단속된 사실이 있습니까?	있 음	없 음
(치료사실이 있는 경우) 병 명: 치료종료일: 치료개시일: 치료 병원:		
(단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속 일시: 위반 행위: 단속기관: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2.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응시자가 14세 미만(제1급 조종면허의 경우 18세 미만)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응시자가 면허시험 면제 대상자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필기시험: 4,800원 실기시험: 64,8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 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2. 신분증 등을 통한 신원확인(기존의 다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포함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조종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종면허가 취소됩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에 따라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인해 중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은 사람은 중지 또는 무효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조종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

접수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종별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상황				
연월일	번호				1회	2회	3회	4회	5회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필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실기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월 일 번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응 시 표

접수번호	제	호	접수일자
응 시 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성명 (영문)	성	
		이름	
	※ 성명(영문)란은 영문 조종면허발급 확인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주소		사진 (3.5cm × 4.5cm) (압인)
	연락처	자택	
휴대폰			
이메일			
응시면허 종별	면허		

응시 횟수	필기시험			실기시험		
	시험 일시	응시번호	판정	시험 일시	응시번호	판정
1						
2						
3						
4						
5						

주의사항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시작 30분 전에 입실을 마쳐야 합니다.
-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등 국가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을 포함하며, 사진이 부착된 것을 말합니다) 및 컴퓨터용 사인펜을 지참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당일에 다시 필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2일이 지난 후에 다시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의 유효기간은 접수일부터 1년까지로 하되, 면허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그 합격일부터 1년까지입니다.
- 불합격된 사람이 다시 응시하려면 이 응시표를 잘 보관하였다가 접수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시험에 합격하였어도 조종면허증을 받기 전에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면 무면허조종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 조종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2년간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일정 변경은 시험 응시일 2일 전까지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boat.kcg.go.kr>) 또는 시험장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일 반 조 종 면 허 실 기 시 험 채 점 표 (No 00-00000)

해 양 경 찰 청

- OO조종면허시험장 -

KOREA COAST GUARD

[면허종별 : 일반 (급)조종면허] [시험선 : 제 호] [시험시간 : 20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응 시 자		평가 구분	과제 번호	감점수 감점항목	감 점 행 위				
					9	6	4	3	2
응시 번호		조 종 능 력	1	출발전 점검 및 확인 (2)				구명조끼 착용불량 (), 점검사항 누락 ()	
성 명			2	출 발 (6)				30초 이상 출발지연 (), 정지줄 미착용 (), 안전 미확인·얕기전 출발 (①②③), 15초이내 출발침로 ±10°이내 유지불량 (), 출발침로 ±10°이상 불안정 ()	시동불량 (), 계류줄 묶임 (), 출발시 선체접촉 (), 급조작·급출발 (), 레버마찰음 발생 또는 엔진정지 (), 트립스위치 작동 ()
한글			3	변 침 (2)				지시각도 ±10°초과 (45.90,180) (45.90,180), ±10°이내 침로유지 불량 (45.90,180) (45.90,180)	변침전 안전상태() (), 선체동요 () (), 변침속력 () ()
한자			4	운 향 (2)			활주시간 15초 초과 () (), 활주상태 유지불량 () (), 저속 또는 과속 () ()		핸들 비정면·강틀 팔 (), 교정지지 불응 (), 한손·서서조종 (), 불필요한 레버조작 ()
성별	남 여		5	사 행 (4)	부이 3m접근 (①②③) (①②③) 부이 15m초과·미사행 (①②③) (①②③)			반대방향진행 (), 사행진입 불량 (), 사행후 침로불량 (), 심한 동요·쏠림 (), 부자연스러운 선회 ()	
생년월일			6	급정지 및 후진 (2)			급정지 3초초과 (), 후진레버사용 ()		후진방향 미확인 (), 후진침로 ±10°이상 (), 후진레버 급조작·급후진 ()
참 관 인			7	인명구조 (3)		물에 빠진사람과 충돌 (), 2분 이내 구조실패 ()		3초이내 물에 빠진사람 미확인 (), 5초이내 물에 빠진사람 발생방향 미전환 (), 조종석 1m이내 접근불량 (), 3노트이상 접근 (), 미중립·후진사용 ()	
응시 번호			8	접 안 (2)				접안속도 초과 (), 평행상태 (), 계류장 충돌 (), 접안실패 ()	
성명									
운항코스		평가 결과	감 점 소 계		9 × () = ()	6 × () = ()	4 × () = ()	3 × () = ()	2 × () = ()
			실 격	3회이상 출항불가 (), 응시자의 시험포기 (), 조종능력부족으로 시험진행 곤란 (), 현저한 사고위험 (), 음주상태 (), 시험관의 지시·통제불응 또는 임의 시험 진행 (), 중간점수 합격기준 미달 ()					
검 인			특 기 사 항						
①			득 점 결 과	100 - () = ()	판 정	합 격	불 합 격	실 격	책임운영자
									①

위와 같이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시험관 소속 :

성명 :

①

요 트 조 종 면 허 실 기 시 험 채 점 표 (No 00-000)

해 양 경 찰 청

- OO조종면허시험장 -

KOREA COAST GUARD

[면허종별 : 요트조종면허] [시험선 : 제 회] [시험시간 : 20 년 월 일 시 분 부터 시 분까지]

응 시 자		평가 구분	과제 번호	감점 항목	감 점	행 위	
					3	4	
응시 번호		조 종 능 력	1	출발전 점검 및 확인 (3)	8자 묶기 () () (), bowline 묶기 () () (), clove 묶기 () () (), cleat 묶기 () () ()	구명조끼 착용불량 (), 위치선정 불량 (), ⑤출항전 안전확인 ()	
성 명	2		출발 및 기주 (5)	⑤계류장 충격 () () (), ③펜더달고 운항 () () (), ③계류줄 미정리 () () (), ③출항준비 불량 () () (), ⑤2회이상 이안곤란 () () ()	⑤지휘불량 (), ⑤엔진시동 미숙 (), ⑤레버조작 불량 (), ⑤레버 급조작·급출발 (), ⑤항내기주 속도 초과 () () (), ⑤지정침로 15초과 () () (), ⑤침로유지 불량 () () ()		
한글			3	범 주 (4)	< 태 킹(tacking) > ③준비동작 불량 () () (), ③태킹동작 불량 () () (), ③위치선정 불량 () () (), ③돛 또는 시트상태 불량 () () () < 자이빙(gybing) > ③준비동작 불량 () () (), ③자이빙동작 불량 () () (), ③위치선정 불량 () () (), ③돛 또는 시트상태 불량 () () ()	< 태 킹(tacking) > ③태킹 불량 () () (), ③태킹지휘 불량 () () (), ③태킹 후 침로유지 불량 () () (), ③위치이동 불량 () () () < 자이빙(gybing) > ③방향전환 불량 () () (), ③자이빙 지휘불량 () () (), ③자이빙 후 침로유지 불량 () () (), ③위치이동 불량 () () ()	
한문							
성별	남 여						
생년월일							
참 관 인		4	입 항 (4)	⑤계류위치 부적절 (), ③결색 불량 (), ③펜더높이 부적절 (), ③펜더 묶인상태 부적절 (), ③계류후 포프정리 불량 ()	⑤50m전방 3노트 초과·미중립 (), ⑤계류장 충돌 (), ⑤접안불량 ()		
응시번호		감 점 소 계		3 × () = ()		4 × () = ()	
성 명		평가 결과	실 격		3분 이내 출발불가 (), 응시자 시험포기 (), 현저한 조종능력 부족 (), 사고 일으킴 (), 현저한 사고위험 (), 시험관의 지시통제불응 (), 중간감점점수 합계가 합격기준에 미달 ()		
검 인			특 기 사 항				
인			득 점 결 과		100 - () = ()	판 정	합 격 불 합 격 실 격 책임운영자
							인

위와 같이 요트조종면허 실기시험을 실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시험관 소속:

성명:

인

297mm×210mm[백상지 150g/㎡]

실기시험 채점표 검인대장

[illegible]

시험성적표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신청서

*해양경찰청의 지정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 기관·단체	명칭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계획서(또는 사업계획서) 3. 실기교육장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 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본 5.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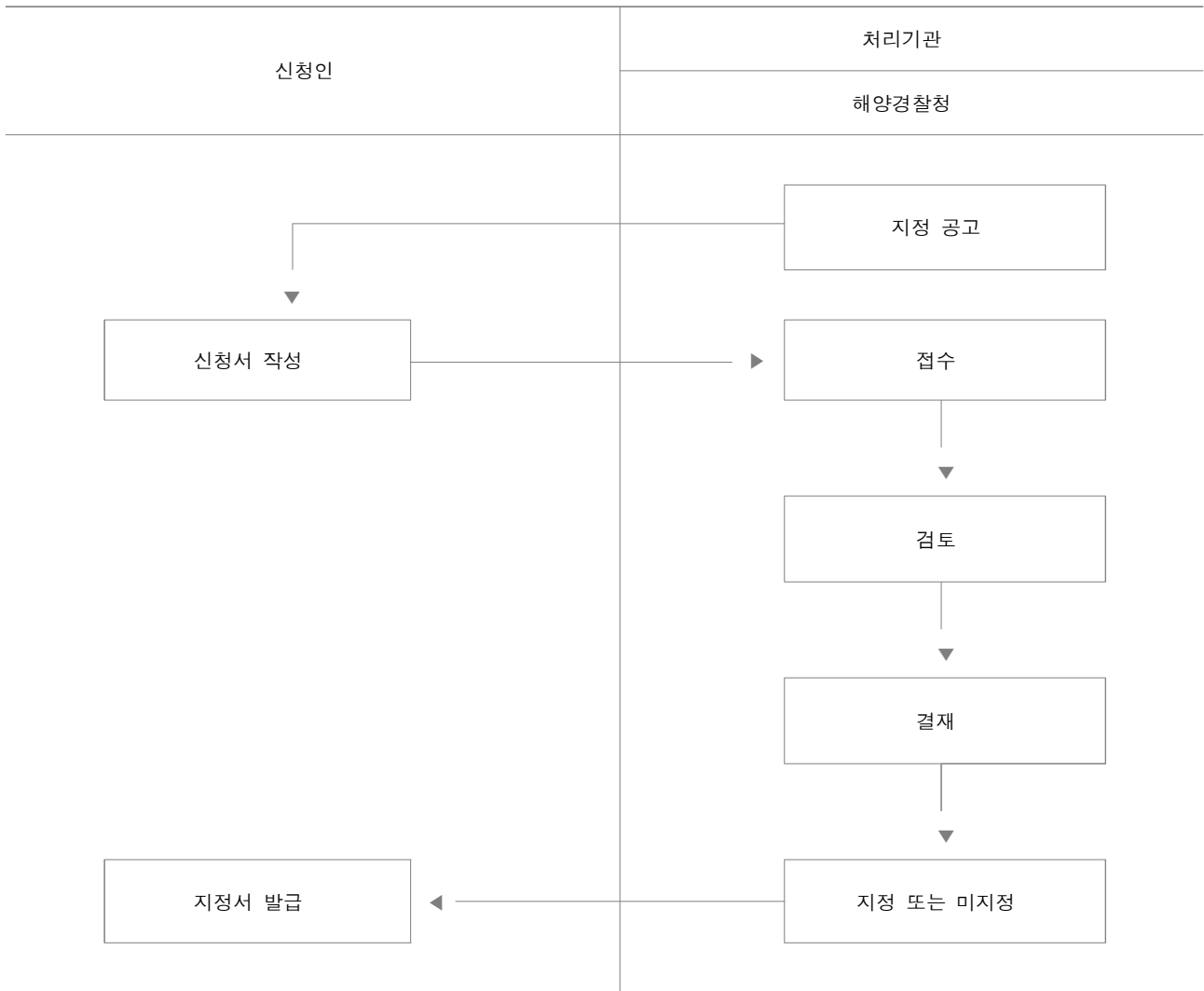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서

(앞쪽)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위 기관을 「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라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변경 및 처분 사항

지정번호 제 호

연월일	내용	확인

제 호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지정취소
[] 업무정지 통지서

조종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행정처분 결정내용	지정취소 년 월 일	
	업무정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일간)	
	사유	

- 「수상레저안전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 지정취소 [] 업무정지)처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조종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지정취소 된 경우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청에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조종면허증 [☐ 갱신기간 연기 ☐ 사전갱신]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고, 중복되는 경우 해당되는 곳 모두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	------	------	-----

*신청자와 갱신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자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갱신대상자와 관계
	주소	전화번호	

사전갱신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면허 번호	수상안전교육일
	갱신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갱신기간 연기 대상자	사유 [] 해외 체류, [] 재해 또는 재난, [] 질병 또는 부상, [] 법령에 따른 신체자유 구속, [] 군복무, [] 기타
	연기기간 *연기사유 해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년 월 일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종면허증 갱신기간의 연기(사전갱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조종면허증 갱신기간 연기 또는 사전갱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신청서

*해양경찰청의 지정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 기관·단체	명칭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 계획서 3. 교육장 시설 명세서 4.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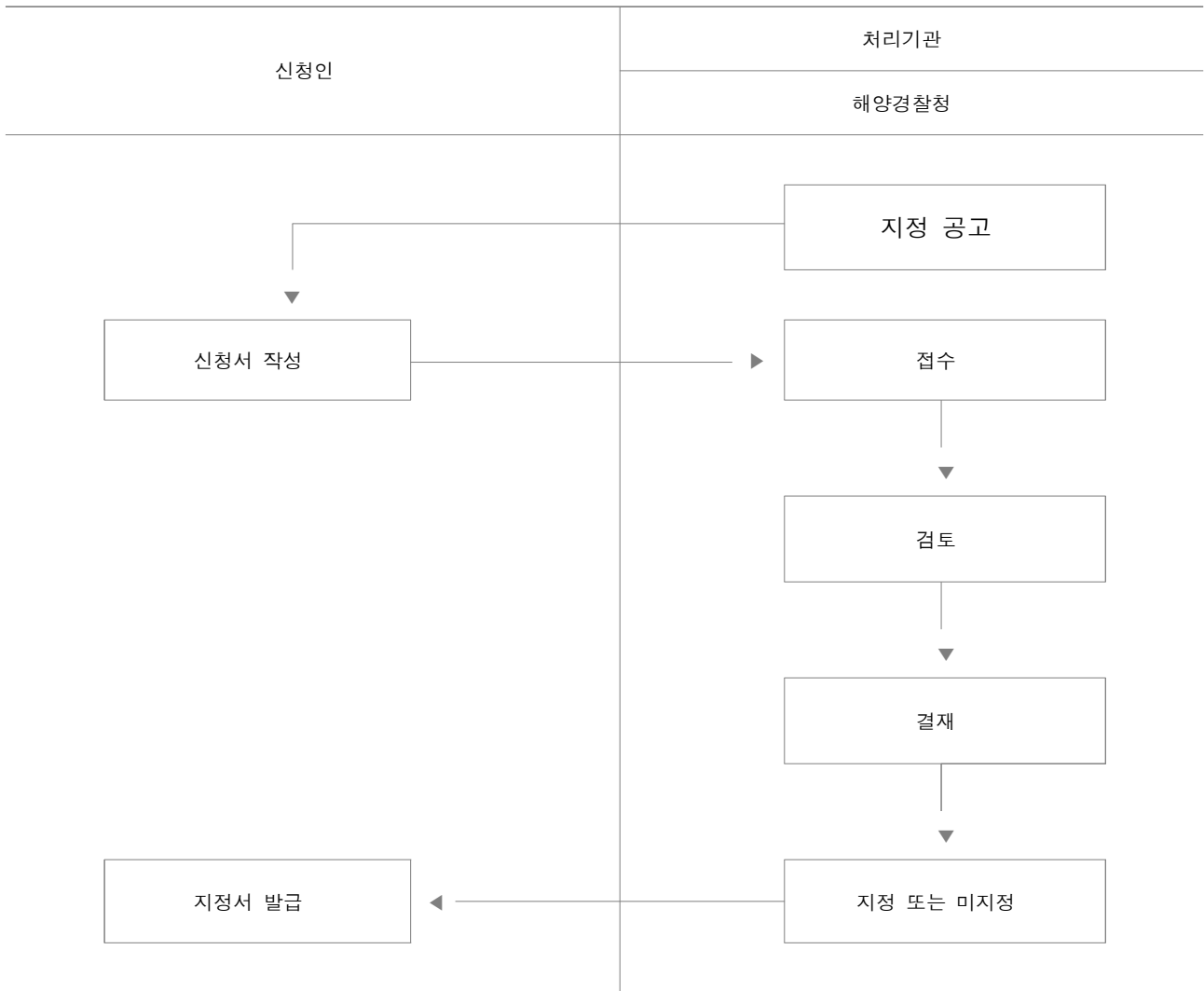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 호 수상안전교육 수료증 ☐ 일반조종 1급 ☐ 일반조종 2급 ☐ 요트조종	확인
성 명 : 생년월일 : (외국인등록번호) 위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상안전교육 ☐ 신규 또는 ☐ 갱신)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장 [인]	

86mm×54mm[백상지 120g/㎡]

(앞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면허번호)	
사진 (모자를 벗은 상반 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면 허 종 별: 성 명: 생 년 월 일: 면 허 증 갱 신 기 간:
(발급일)	해양경찰청장 직인

86mm×54mm[PVC(비닐) 980.4g/m²]

※ 참고

면허증의 바탕색은 밝고 연한 하늘색으로 하고, 원색과 별색 잉크를 복합한 미세선 문양과 위조방지용 디자인 및 비표(秘標)를 넣어야 한다.

(뒤쪽)

1. 조종면허 갱신기간(발급일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갱신하지 않으면 갱신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부터 조종면허의 효력은 정지됩니다. 다만, 면허증의 효력이 정지된
날 이후에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갱신한 날부터 면허증의 효력이
다시 발생합니다.
2. 조종면허 갱신기간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홈페이지(<http://boat.kcg.go.kr>)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 재발급 [] 갱신발급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	------	------	-----

*신청자와 발급대상자가 동일한 경우 신청자란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갱신대상자와 관계
	전화번호	주소	

발급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진 3.5cm × 4.5cm (탈모 상반신으로 뒷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
	주소	전화번호	
	면허증 수령지(주소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 생략)		

재발급 사유	*재발급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분실, []훼손·오손, []기타 (기타사유:)
-----------	--

「수상레저안전법」 제12조 또는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재발급, []갱신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사진 1장(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3.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수상안전교육 수료증(갱신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5. 대리신청인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수수료 4,000원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업무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여권정보의 경우 여권을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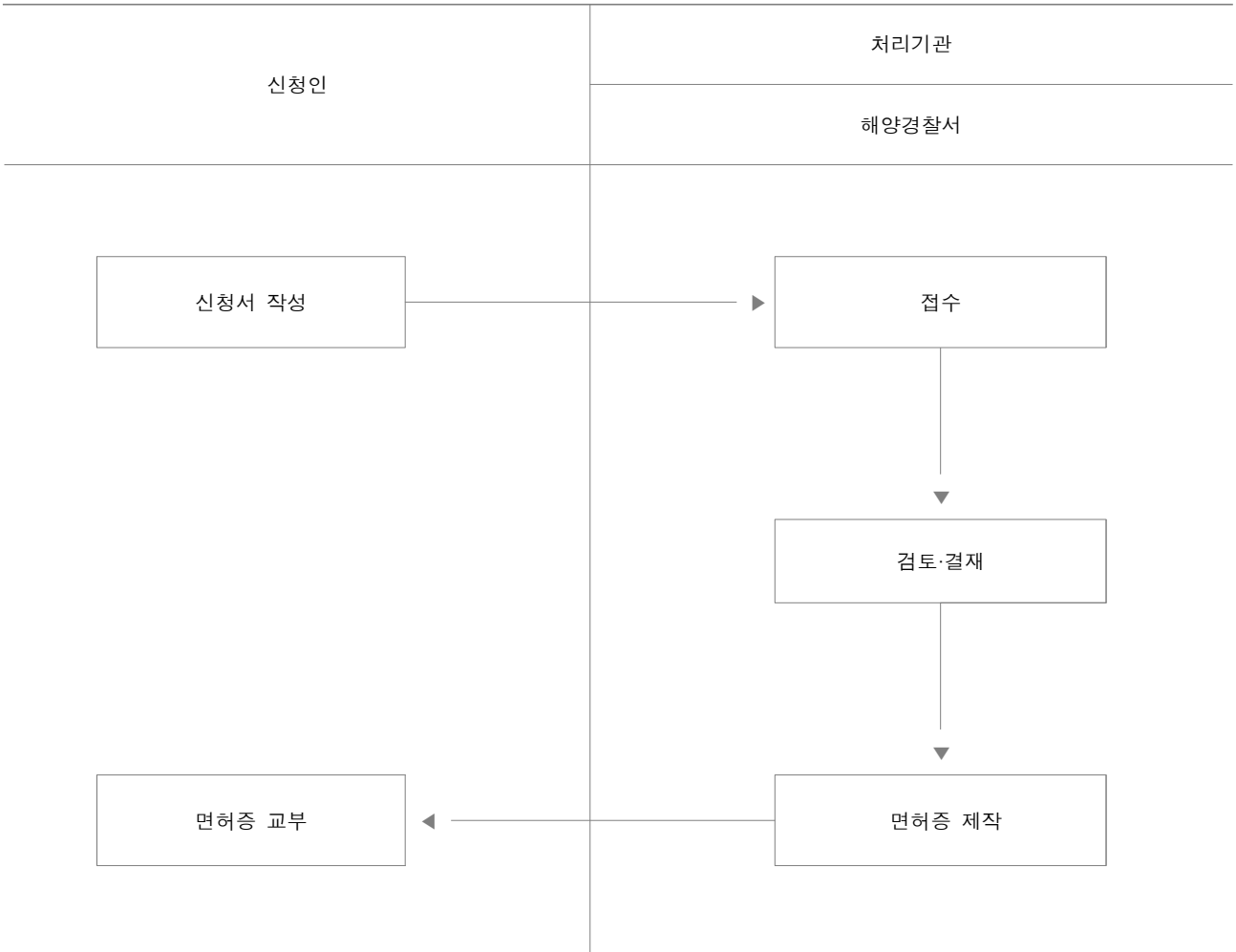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 갱신발급·재발급 대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영문	성								
		이름								
신청내용		용도				수량				
						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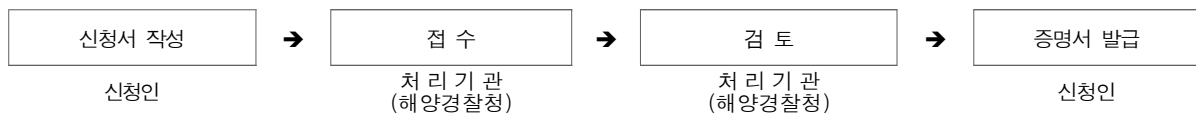
해양경찰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유의사항

1. 성명, 생년월일은 면허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영문 성명은 여권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제 001호(No. 001)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증명서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Operator's Certificate)

성 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면허종별 : ☐ 제1급 조종면허, ☐ 제2급 조종면허, ☐ 요트조종면허

(Type of License : ☐ 1st Class, ☐ 2nd Class, ☐ Yacht)

면허번호 (License No.) :

갱신기간 (Renewal Period of License) :

면허취득일 (Date of Acquiring License) :

사진
(3cm×4cm)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named person is qualified to be an operator of the power-driven water leisure craft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5 of the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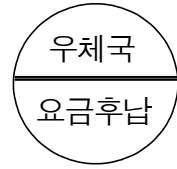
년(Y) 월(M) 일(D)

해양경찰청장
Commissioner General of Korea Coast Guard

직인
seal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행정우편

□□□-□□□

접는 선

년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정지) 처분사전통지서

주소:

대상:

출석요구일: 년 월 일

접는 선

귀하가 아래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지대상(취소대상)이 된 사실에 대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서(수상레저계·민원실)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
허 정지·취소처분 사전통지서, 조종면허증 및 도장을 지참하시고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내용: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또는 업무정지 00월

처분사유:

※ 일요일 및 공휴일은 휴무일입니다.

※ 위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년 월 일

○○ 해양경찰서장

직인

안내전화:

담당자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

제 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 취소
[] 정지
[] 경고 **처분 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	------

주소

면허 구분 및 번호	구분	번호
행정처분 결정내용	정지처분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일간)	
	취소처분 년 월 일	
	경고처분 년 월 일	

사유

1. 「수상레저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의 (□취소, □정지, □경고)처분이 결정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년 월 일까지 해양경찰관서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직인

유의사항

1.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처분 결정내용에 따라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 집행됩니다.
2. 조종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사람이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종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1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조종면허 취소처분·정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행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 지정신청서

*해양경찰청의 지정공고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신청 기관·단체	명칭	(전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수상레저 관련 근무경력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실기시험코스 명세서(계류장 및 수험자 대기시설의 도면을 포함한다) 4.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5.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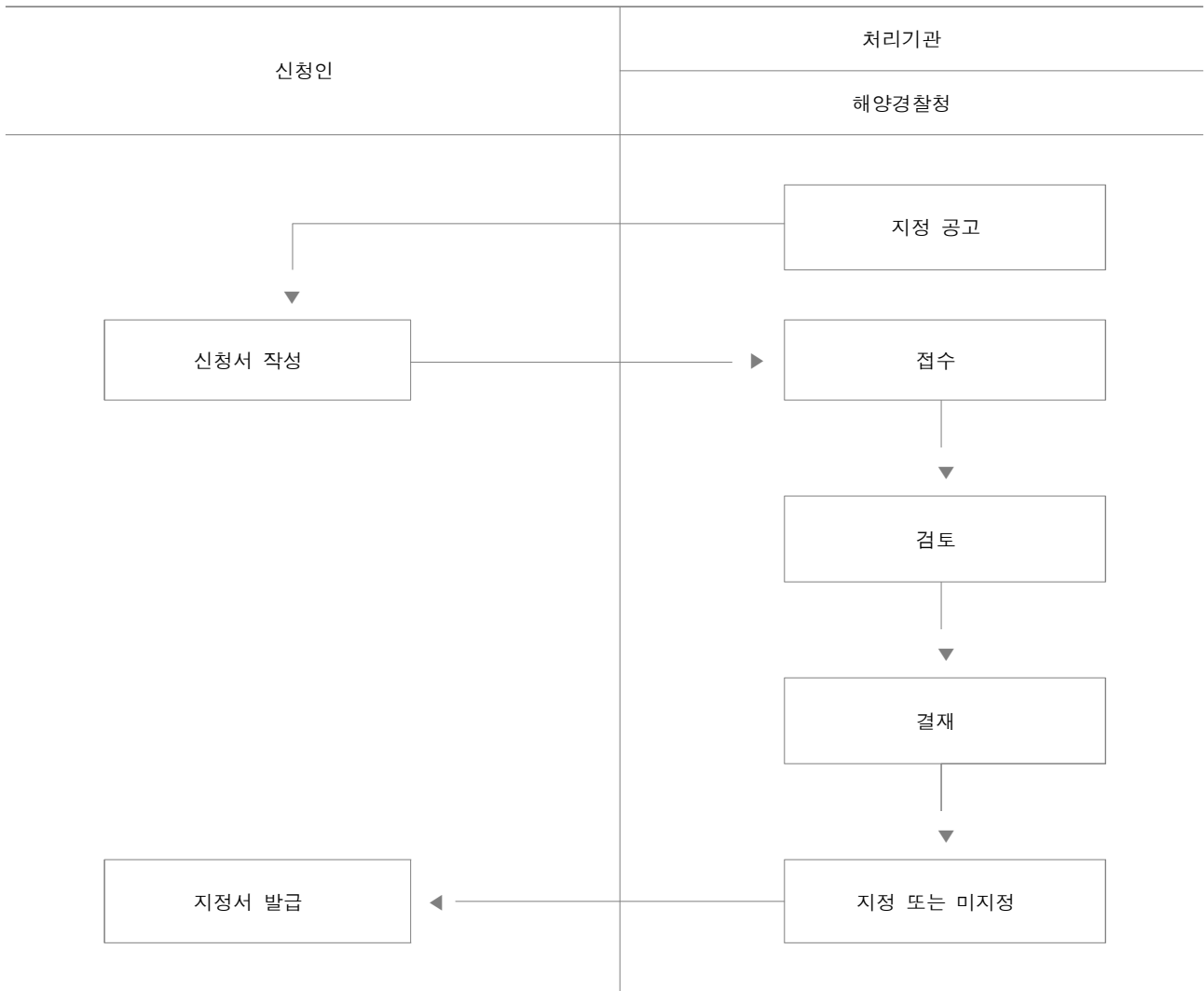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운항구역 외 운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고사항	출항	일자·시간	장소			
	운항구간 (활동지)					
	입항예정	일자·시간	장소			
	안전관리 선박	선박명(총톤수)	운항구역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선단의 구성	운항자 성명	생년월일	선박 종류	선박명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기상특보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레저기구 제원(諸元)	기구 종류	활동자 수	

신고사항

출항(활동해변 등)				입항(활동 종료해변 등)	
일시	활동지	활동 종료 예정		일시	활동종료지
		일 시	장 소		

사유

동승 또는 동행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담당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상레저 기구제원	종류	기구명	총톤수		
	재질	정원	활동자 수		
신고사항	출항	일자·시간	장소	주 활동지	
	입항예정	일자·시간	장소		
	동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0조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경우에 기재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선박명(총톤수)	항해구역	운항자 성명(전화번호)	
	② 선단의 구성	기구의 명칭	운항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해양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법 제6조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가 아닌 수상레저기구로 원거리 출항을 하는 경우에는 ① 안전관리 선박의 동행 또는 ② 선단의 구성 중 한 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수상오토바이, 20톤 미만 모터보트, 20톤 미만 세일링 요트, 30마력 이상 고무보트
- 선단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신기기를 구비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수상레저사업 ☐ 등록 ☐ 등록갱신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14일 등록 갱신: 5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의 유형 ☐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1항·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등록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등록 신청하는 경우 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사업장 명세서 다.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라.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사.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빌려주는 사업 중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또는 카이트보드를 빌려주는 수상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목의 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서 2. 등록 갱신신청하는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중 변경된 서류 각 1부	수수료 등록 20,000원 등록 갱신: 1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 신청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수상레저사업자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등록 갱신신청시에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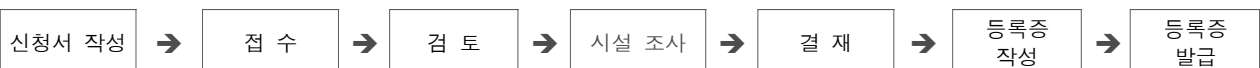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

등록번호 제 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
☐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사업기간

영업시간

요금

종사자 명
 안전요원 명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인]

변경 및 처분 사항

등록번호 제 호

연월일	내용	확인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사업장의 위치

변 경 사 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대표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0,000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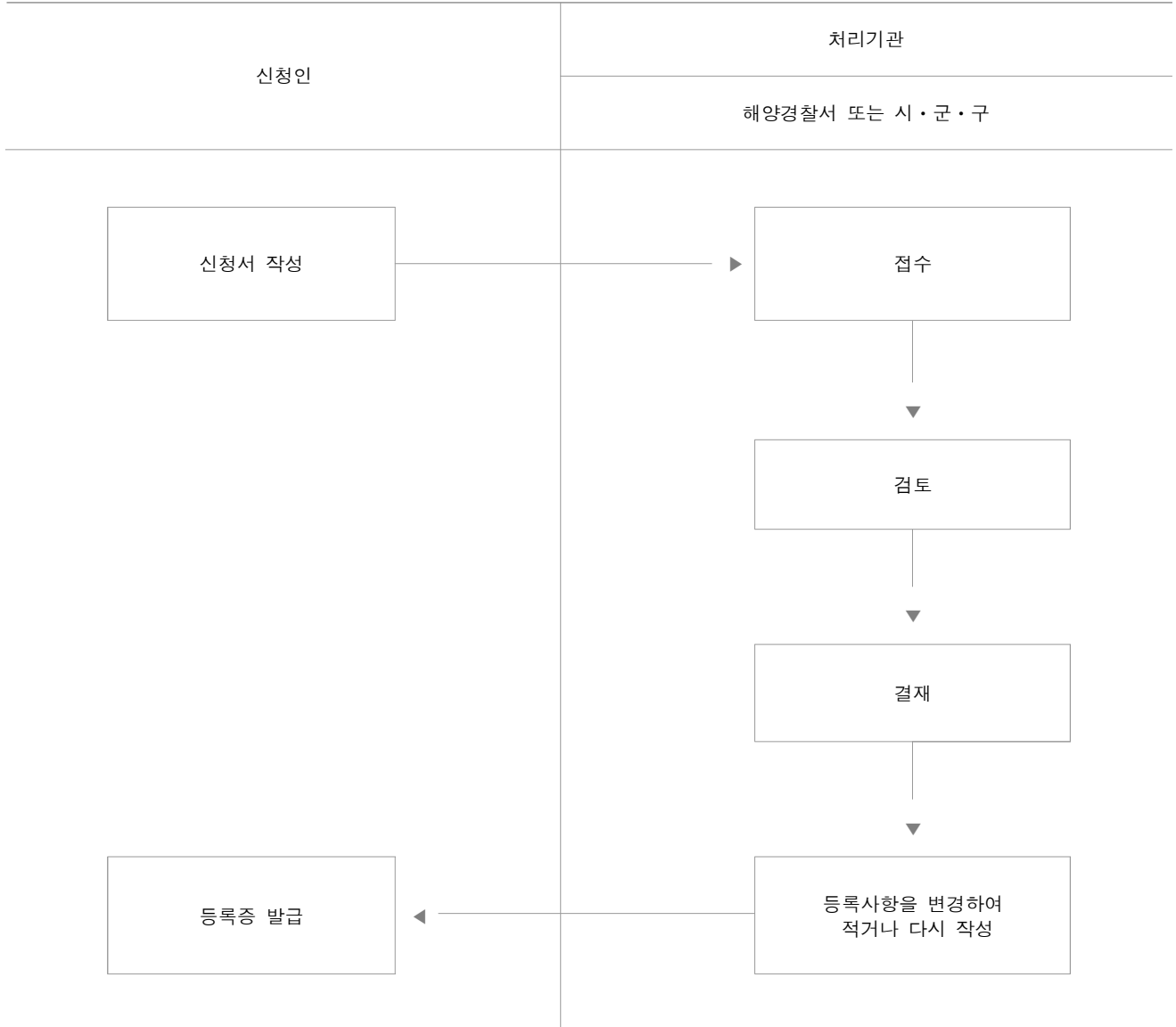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수상레저사업

[] 휴 업

[] 폐 업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신고사항	휴업일(폐업일)		
	휴업(폐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수수료
		없음

수상레저사업 재개업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재개업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사업장 명세서 3.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 명세서 4.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 가이드를 포함합니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7.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사본(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빌려주는 사업 중 육상에서 보관하는 서프보드, 윈드서핑, 패들보드 또는 카이트보드를 빌려주는 수상 레저사업(이용자가 직접 해당 수상레저기구를 가져가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사업장 명세서 다. 수상레저기구 장비명세서	수수료
		20,0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 신청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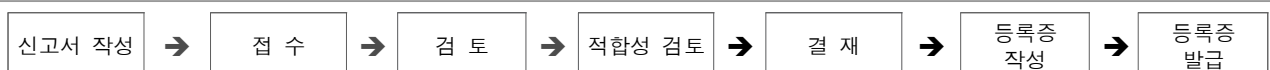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인

처리기관 : 해양경찰서 또는 시·군·구

이용요금

[] 신고서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 시
신 고 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의 위치			
영업구역			
수상레저기구 명세			
탑승 구간 또는 대여 시간	탑승 구간 ~	대여 시간	시간
탑승료	대인		
	소인		
	기타		
대여료			
적용일			
변경 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서

수상레저 사업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화:)		
명령 사항	기구,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기구등록번호
	정비불량 및 원상 훼손 내용	
	의무사항	
	시정기한 ~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정비 및 원상복구 명령 이행계획서

제출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화:)		
이행계획 사항	기구, 시설 또는 장비의 명칭 및 종류	기구등록번호
	정비 및 원상복구할 내용	
	이행완료기한	소요 비용
	정비불량 및 원상훼손 원인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정비 및 원상복구명령 이행 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명령서

소유자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명칭)	
	주소 (전화:)	

사업장 소재지

(전화:)

위반	일시
	장소
	내용

운항정지기간

. . . ~ . . . (일간)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상레저기구의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이 명령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수상레저기구 사용정지표지

1. 수상레저기구의 명칭 및 종류:
2.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
3.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번호:

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라 사용정지를 명령합니다.

해양경찰서장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주 의 사 항

1. 이 표지는 수상레저기구의 앞면의 왼쪽·오른쪽 상단에 각각 붙여야 합니다.
2. 이 표지는 부착 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됩니다.

※ 비고 : 바탕색은 흰색으로, 문자는 본문은 검은색으로, 제목은 붉은색으로 한다.

134mm×190mm[백상지 150g/㎡]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연 락 처	(032) 835 - 2351